

의안번호	제399호
의결 연월일	2012년 10월 일 (제315회)

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황규철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2년 9월 24일

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황규철 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12년 9월 24일

발 의 자 : 황규철 · 정 현 · 권기수 · 김도경
유완백 · 윤성옥 · 이수완 의원(7명)

의안 번호	399
----------	-----

1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의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조례 명칭의 변경 : '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' ⇒ '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'
- 나. 자매결연 체결시 「충청북도 공무 국외여행 규정」을 따르도록 명시(안 제6조)

3. 조례안 : 불 입

4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입

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명 중 “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외국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.

제6조제3항 제2호 중 “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제반절차에 의하여 방문한다.”를 “「충청북도 공무 국외여행 규정」을 따른다.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~ 제3조 (생략)</p> <p>제4조(자매결연의 제의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자매결연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제5조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<u>외국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 ~ 제3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자매결연의 제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자매결연의 체결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자매결연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외국자치단체에서 서명할 경우 : 방문일정은 외국자치단체와 협의하되 입수할 자료와 시찰대상지를 사전에 정하여 방문계획을 통보하고 초청장이 접수되면 <u>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제반절차에 의하여 방문한다.</u>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	<p>제6조(자매결연의 체결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충청북도 공무 국외여행 규정」을 따른다.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